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17. 11. 14. 2017도13421]



【판시사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에 '단순 누락'의 경우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 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제4항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 2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일반적 게재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제80조 제7호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

【전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법 2017. 8. 11. 선고 2017노1990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 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자"를 처벌하고 있다.
- 즉,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일반적 게 재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그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
-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인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 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사원증번호의 기재를 누락하였을 뿐이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본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